

450만 장애인은 차별시정기구 일원화를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방적인 법개정안을 반대한다.

450만 장애인을 대표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차금법') 제정을 추진해오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정부의 차별시정기구를 일원화하는 방침아래 입법부에 슬그머니 넘어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대의 뜻을 표한다.

○ 권한이나 실효성에는 진전 없이 범위와 기능만 확대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 차별금지가 있어도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법 때문에 450만 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많은 기대를 걸어왔었음.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강제력이나 시정을 시킬만한 권한이 없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은 제1호 진정사건이기도 한 제천시차별사례에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왔음.
- 이러한 권한의 부재의 한계 때문에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어 독자적이고 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시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해왔던 것임.
- 그런데 인권위 개정안은 지방사무소를 설치하는 것 외에는 근본적으로는 인권위의 위상과 권한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기능만 확대한 것에 불과한 것임.
- 이렇게 위상이나 권한에는 큰 변화 없이 인권위의 기능과 책임만 확대된다면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제 역할보다는 기능과 책임을 떠맡기 위해 기구만 방대해줄 우려가 크다고 할 것임.

○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장애인차별을 논하려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장애인 차별이라는 것은 실제로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차별의 특성상 차별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데에는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감수성 있게 접근해야함.
- 그러나 적은 규모의 조직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모든 인권침해와 사인에 의

한 모든 차별행위를 전부 다루고 있는 인권위로서는 전문위원회 등으로 향후 그 역량을 보장한다 해도 그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특히 장애 및 차별 판단 기준의 다양성 등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에 현재도 진정 이후 3~4개월이나 되어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앞으로 그 범위와 기능이 확대된다고 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한 장애인의 하염없는 기다림만 길어질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애인차별을 논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장애인차별은 장애인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감수성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를 보임. 또한 다른 차별문제와 달리 차별에 대한 집단간 학습이 되지 않기에 장애인 개개인에게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불러일으켜야하는데, 이러한 감수성은 장애당사자성을 갖고 적극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음
- 이미 인권위가 토익, 토플 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대필제도 등의 제도가 미흡하다는 진정 사건에 대하여 출제주관기관이 미국 ETS사이프로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처리한 바 있는 사례에도 나타났듯이 인권위가 장애인차별에 대한 감수성에 부족하다는 것이 인지되었고, 인권위안대로 범위와 기능이 확대될 경우 상황은 더더욱 악화될 우려가 높음.

○ 차별시정기구 일원화에 대한 공론화 없이 밀실에서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차별시정기구 일원화에 대한 방침이 정해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한 논의를 개방하지 않아왔으며, 사회적차별금지법안 역시도 개방하지 않고 극히 폐쇄된 상태에서 논의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장애인계가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해왔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장애인계의 바람과 의견은 묵살한채 밀실에서 법안을 추진해온 것임.
- 인권을 유린당하는 절박한 현실에 처한 국민들의 인권에 귀기울여주고, 소중하게 다루겠다고 약속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방

향을 좌우할 수 있는 법안 개정문제를 밑실에서 추진해왔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용납되어서도 안될 일일 것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는 나라마다의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경제적 배경과 기존의 법체계에 따라 그 위상과 형태를 달리한다. 따라서 인권과 차별문제를 시정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기구 또한 자국의 인권보장과 증진 요청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법체계와 현실 등에 비추어 가장 합당한 모습의 위원회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450만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먼저 공론화한 다음에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